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. 12. 20 선고 2023가단2527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, C

피고D

변론 종결2023. 12. 6.

판결 선고2023. 12. 20.

주 문

1. 피고와 E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21. 11. 18. 체결한 증여계약을 20,787,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0,787,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 중 1/5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E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였고, 위와 같은 신용카드이용으로 2021. 11. 18. 기준 22,316,906원의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연체료가 발생하였다.

나. 원고는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청주시방법원 충주지원 2022차전163호로 E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, 2022. 2. 18. E는 원고에게 아래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, 위 지급명령에 기한 2023. 6. 27. 기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액은 24,087,743원이다.

1. 금 19,525,632 원

2. 위 1항 금액 중 금 2,476,270원에 대하여는 2022.02.08.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6.7%, 금 12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2.02.08.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8.1%, 금 1,490,177원에 대하여는 2022.02.08.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%, 금 2,800,000원에 대하여는 2022.02.08.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.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

다. 피고는 2021. 11. 18.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 중 1/2 지분을 증여(이하 '이 사건 처분행위'라 한다)받고, 청주시방법원 진천등기소 2021. 11. 23. 접수 제21736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E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던 반면,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신용카드회사 내지 금융기관 등에게 합계 56,728,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, 제5호증, 이 법원의 충주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, 이 법원의 F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

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발생한 신용카드이용대금 등의

채권을 보유하고 있고, E가 이 사건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유일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,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(대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). 또한 수익자인 피고도 악의로 추정되므로(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)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E의 경제적 상황 및 이 사건 처분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데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), E와 피고가 부자지간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E의 경제적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, 피고가 제출한 E의 사실확인서(을 제3호증)는 피고와 E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, 피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나. 원상회복의 방법

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),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22. 4. 28. 접수 제6265호로 근저당권자 G조합, 채무자 피고, 채권최고액 22,1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원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. 한편,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는데, 원고의 피고에 대한

채권액이 24,087,743원¹⁾ 2) 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,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의 가액은 20,787,200원[= 1m²당 공시지가 22,400원 × 토지면적 1,856m² × 1/2 지분,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(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),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가액을 평가하기 부족하고,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위한 증거신청을 하지도 아니하므로,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]이므로, 결국 이 사건 처분행위는 20,787,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20,787,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안민영

별지

- 1)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(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),
- 2)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소액이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 신용카드 이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, E가 원고와의 신용카드이용계약 체결 후 신용카드를 실제 이용해 왔고,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여 왔는바, 기초적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해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.